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일자	200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7 ~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2007. 12. 31.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을 적용하고,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7 ~ 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군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안 제15조의2 )  
: 전방조종자동차를 2008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과세  
→ 2007. 12. 31. 이전 등록 차량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 : 65,000원  
→ 2008. 1. 1.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은 100분의 33을 경감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96조의5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8. 6. 20. ~ 7. 1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의2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u></p> <p>1.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1.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u>자동차관리법</u>」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u>지방세법</u>」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u>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u>」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u>자동차관리법</u>」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부칙 (2008. 1. 9 조례 제1876호)</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p>	<p><u>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효력이 있다.</p> <p>제3조(적용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